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29 선고 2021가단1908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
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게 담당변호사 공성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3. 2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8,727㎡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. 8. 1.
접수 제18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8,727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한다거나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김정원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들 간의 관계

별지 기재 토지는 원고의 생모 소외 망 D 소유토지이며, 피고는 원고의 친구입니다.

D는 법률상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나 A의 亡父 소외 E과의 사이에서 원고를 혼인 외 자로 출생하였습니다.(갑제2호증의1,2)

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

소외 A은 2001. 8. 1.경 피고에게 금 5,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일시경 망 D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여,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1. 8. 1. 접수 제18106호로 위 가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.

4. 그 후 소외 A은 2009. 3. 20.경 피고에게 빌린 위 돈을 변제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가등기 이전목적으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전등기신청서, 백지위임장, 가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 및 국내 거소사실증명을 받았습니다.(갑제3호증의1내지4)

5. 소외 A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가등기이전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나,

그 후 사업부도로 인한 충격으로 오랫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 근래 회복되었으나 종전에 받아둔 가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기한도과로 사용할 수 없어 피고에게 가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가등기이전요구에 불응하므로 이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